



환경부

환경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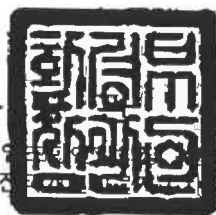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자동차 공회전제한 안내와 홍보 요청

1. 귀 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9조에서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·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, 차고지,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공회전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3.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전국 17개 시·도에서는 대도시 미세먼지 배출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('21.12월-'22.3월)동안 자동차 공회전단속을 병행할 계획입니다.
4. 귀 연합회는 소속 회원들에게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안내와 홍보를 통해 회원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환경부



수신자 전국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, 전국전세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,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,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, 전국개인택시사업조합연합회,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,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,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

환경사무관 홍민강 과장 전갑2021.10.8. 황인묵

협조자

시행 교통환경과-1315 (2021. 10. 8.) 접수

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교통환경과 / <http://me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6939 팩스번호 044-201-6934 / hnm@me.go.kr / 대한민국 공개